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24

발의연월일: 2022. 10. 26.

발 의 자 : 홍석준 · 강대식 · 강기윤

윤창현 · 김태호 · 김예지

김용판 • 임병헌 • 지성호

엄태영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
	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
	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
	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
	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
	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
	<u>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u>
	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
	<u>우</u>